

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 기 대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을 위한 점용허가 갱신의 자산기준이 3억원 미만이며, 2년마다 부동산, 임차보증금, 금융재산, 부채 등을 신고하여 자산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예년 대비 자산한도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존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산한도액 기준을 증액하고자 합니다.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가격의 평균이 5억3천만원이며, 금융자산, 부채 등의

가감을 예상하였을 때 5억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- 또한 2년마다 재산을 신고하는 것이 고령자가 대부분인 운영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으며, 운영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제3조 점용허가의 제3항에서 ‘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’를 ‘3년마다 조회’로 개정하고, ‘3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’를 ‘5억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’로 개정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